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16. . . (제 회)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

| | |
|-------|------------|
| 제출자 | 건강증진과장 |
| 제출연월일 | 2016. 4. .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강북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강북 계획을 수립하고
-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나. 건강도시사업 운영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6조)
- 다.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4. 29. ~ 2016. 5. 20.) 결과,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정책을 수행하여 도시의 건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강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 참여 등) ① 모든 국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